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15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 임오경 · 서영교 · 한정애

박 정ㆍ이성윤ㆍ이기헌

한민수 · 임미애 · 김용민

강유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자의 책임) ①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와 관련된 사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 | 융업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 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 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 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